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7. 7. 12.  
사회건설위원회

###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 2007년 6월 23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07년 7월 2일
- 라. 상정일자 :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2007년 7월 6일)

###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유 종 상)

#### 가. 제 안 이 유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점 범위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호 준용 및 2007.4.11.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 음식물류 폐기물의 친환경적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및 배출업소에 전용용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함.

#### 나. 주 요 내 용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되는 음식점 범위를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준칙안과 동일하게 조례로 명시(안 제2조 제2호)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시간 삭제(안 제5조제1호 및 제3호)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기의 지원근거 신설(안 제8조의 제6항)

###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的 要 旨 ( 專 門 委 員 이 남 식 )

- 2005. 12. 3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중 음식점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면

- 안 제2조제2호에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대상을 명시하고 차류나 제과류를 주로 판매하는 다방,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과 250㎡ 이하의 커피, 주류판매 전문점 등에 대하여는 제외 규정을 두었으며,
- 안 제8조제6항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친환경적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시 규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및 배출업소에 소정의 전용용기를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審査結果 : 原案可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76 |
|----------|----|

제출년월일 : 2007. 6.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점 범위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호 준용 및 2007.4.11.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 음식물류 폐기물의 친환경적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및 배출업소에 전용용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함.

## 2. 주요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에 해당되는 음식점 범위를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준칙안과 동일하게 조례로 명시 (안 제2조 제2호)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시간 삭제 (안 제5조제1호 및 제3호)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기의 지원근거 신설(안 제8조의 제6항)

##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
-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범위조정 준칙안  
- 서울시 환경과-17350(2006.11.07)
- 폐기물관리법 (2007.04.11 전면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배출용기 배부에 관한 질의회신  
-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3155(2006.06.26)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07. 4.19. ~ 5. 9.) 결과 :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규칙 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중 “법 제12조”를 “법 제13조”로 하고, 동조제1호 중 “다만, 규칙 별표 4 제3호라목(1)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이 경우 규칙 제6조의 3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63조제3항제2호”를 “법 제68조제3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친환경적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및 배출업소에 정해진 전용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수거·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로 하고, 동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운반”을 “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1조의 2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동조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6조의 2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 3제4호에 따라 재활용 창구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규칙제정)”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의 2의 제목과 본문, 제11조의 3의 제목 및 제12조의 제목·제1항·제3항 중 “수거·운반”을 “수집·운반”으로 한다.

조와 조 제목은 붙여 쓰고,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쓴다.

[별표 3] 제2호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중 부과항목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법 제12조 관련)”을 “(법 제13조 관련)”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p>  |
| <p>제2조 (정의) (생략)</p> <p>1. (생략)</p> <p>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규칙 별표4의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p> |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규칙 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p> |
| <p>3. ~ 6. (생략)</p>  | <p>3. ~ 6. (현행과 같음)</p>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u>법 제13조제1항</u>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u>수거·운반·처리</u> 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제3조(적용범위) ----- <u>법 제14조제1항</u>   |   | <u>수집·운반</u> |
|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br>① (생략)<br>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u>수거·운반·재활용</u> 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요일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br>① (현행과 같음)<br>② 구청장은 -----<br><u>수집·운반·재활용</u> 하기 -----  |   |              |
|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생략)<br>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12시까지로 하며,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u>지정된 장소</u>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br>2. (생략)<br>3. 제1호에 의하여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br>의 수거시간은 매일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한다. |   |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현행과 같음)<br>1.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u>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u>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br>2. (현행과 같음)<br><삭 제> |   |              |
|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u>법 제12조</u> 및 영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br>-----<br>----- <u>법 제13조</u> -----<br>-----  |   |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별표4 제3호라목(1)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p> <p>2. ~ 3. (생략)</p> <p><b>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b></p> <p>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b>법 제63조제3항제2호</b>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 <p>1. -----</p> <p>-----</p> <p>-----</p> <p>-----</p> <p>-----</p> <p>----. 이 경우 규칙 제6조의 3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2. ~ 3. (현행과 같음)</p> <p><b>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 <b>법</b></p> <p><b>제68조제3항제3호</b> -----</p> <p>-----.</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b>&lt;신 설&gt; ⑥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친환경적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및 배출업소에 정해진 전용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b></p>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p> <p>2. <u>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u>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p> <p>3. (생략)</p>   | <p>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br/>-----</p> <p>2.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br/>-----</p> <p>3. (현행과 같음)</p>   |
| <p>제11조의 3 (<u>수거·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u>)</p> <p>① ~ ② (생략)</p>   | <p>제11조의 3(<u>수집·운반</u> -----<br/>-----)</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
| <p>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u>수거·운반 및 재활용</u>) ①구청장은 분리배출지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u>수거·운반</u>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u>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거·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족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u></p> | <p>제12조(----- <u>수집·운반</u> -----)<br/>-----) ① -----<br/>----- <u>수집·운반</u> -----<br/>-----.</p> <p>② -----<br/>----- <u>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6조의 2에 따른</u><br/>-----<br/>----- (-----<br/>----- <u>경우로 제한한다)</u> ----- <u>신고자</u><br/>-----<br/>----- <u>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u> -----<br/>----- <u>제8조제4항 및 규칙</u><br/>----- <u>제6조의 3제4호에 따라</u> -----<br/>-----<br/>----- <u>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u></p>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u>수거·운반</u>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u>수거·운반</u>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④ ~ ⑤ (생략)</p> <p><b>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b></p> <p>① (생략)</p> <p>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u>지방세법</u>의 규정에 따른다.</p> <p><b>제16조 (규칙제정) (생략)</b></p> | <p>③ -----<br/><u>수집·운반</u>-----<br/>-----<br/>----- <u>수집·운반</u> -----<br/>-----<br/>-----<br/>-----<br/>-----<br/>-----<br/>-----</p> <p>④ ~ ⑤ (생략)</p> <p><b>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br/>-----<br/>----- 「<u>지방세법</u>」 -----<br/>-----</p> <p><b>제1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b></p> |